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06호

2020.06.22(월)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6차 지부교섭_1차 제시안 제출]

아직 한참 부족하다!

예전 방식으로 위기 극복 못한다!

지난주 18일(목) 충주 한국KDK에서 6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사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기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이에 대해 “과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첫 발걸음을 떼고 투쟁을 잡을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내용 제시

이날 교섭에서 6차 교섭만에 첫 제시안이 나왔지만, 역시나 한참 부족한 내용만 제출됐다. 노동3권 보장은 현행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내용이고, 감염병 보호는 정부 지침을 지키고 사업장별로 협의하자며 사실상 무의미한 내용을 제출했다. 지부 공직취임 요구안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며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첫 제시안이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다.

<사측 1차 제시안>

1. 2020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1)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쌍방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2) 쟁의 중 시설이용 : 추후 제시

3)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 추후 제시

4)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 추후 제시

5)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지 아니한다.

6) 불이행 책임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뒷면에 계속)

6차 교섭 속기록

사업주 주머니 풀어야 함께 살 수 있다

사 :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들도 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 직원이나 주주 모두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 됐다.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종업원이 있어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있어야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 노사 모두 노력해보자.

노 :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안타깝고 걱정이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경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걱정이다. 과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어제 지회장 수련회에서 사업장 요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첫 발걸음을 떼고 투쟁을 잡을 예정이다. 작은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매개로 미래산업 및 산업재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주 주머니를 풀어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제시안이 있으면 제시안 제출하면 검토하겠다.

사 : <제시안 제출>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 관련한 안은 중앙교섭 제시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부 요구안인 공직취임안은 추가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노 : 지금 제시안은 많이 부족하다. 공직 취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뭔가?

사 :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 : 차기교섭은 6월 25일(목) 15시 한온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사측 1차 제시안>

(앞면에 이어서)

3. 공직취임

1)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인정한다. 단, 직선제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2) 회사는 해당자에 대해서 상급단체 임명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복귀를 원할 경우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유사직에 복귀시킨다.

3) 해당자의 처우는 지회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 회사와 노동조합은 정부가 지정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감염병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른다.

2) 제1항의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합의하여 실시한다.

3) 회사와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 예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회사와 노동조합은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한다.

5) 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5. 본조 및 지부 주관 회의시 지회, 지부 담당 간부 시간할애 : 제시 없음